공직선거법위반

[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0. 7. 2. 2010고합8]

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 박대범

【변 호 인】 강남종합 법무법인 외 2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5, 6, 7, 8, 9, 10, 11, 12에 대한 선거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,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음을 내용으로 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1